W - 20 - 2012

나노물질 제조·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산업안전보건공단 신현화 ○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공단 유기호

○ 제정 경과

2009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2009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- 관련 규격 및 자료
 - Approaches to safe nanotechnology(미국 NIOSH NTRC, 2009)
 - 나노물질 제조·취급 작업 현장에서의 폭로방지를 위한 예방적 대응 (일본 후생노동성, 2008)
 - 작업장 나노물질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지침서(독일 BAUA, 2007)
 - 합성나노입자 위험관리를 위한 우수실용지침(캐나다 IRSST, 2008)
 - 유해물질 노출 나노입자의 모니터링기법 개발 및 노출연구(OSHRI,2008)
 -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/연구실의 안전보건지침(기술표준원, 2009)
- 관련법규, 규칙, 고시 등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3조 (안전조치)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 (보건조치)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5조 (근로자의 준수사항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나노물질 제조·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3조(안전조치), 제24조(보건조치), 제25조(근로 자의 준수사항)에 따라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의 제조·취급에 따른 근로자의 건 강장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나노물질을 제조·취급(이하 "취급"으로 한다)하는 사업주 및 근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나노입자(Nanoparticles)"란 1~100 nm 범위의 직경을 가진 입자를 말한다
 - (나) "나노구조물질(Nanostructured material)"이란 나노크기의 입자를 포함하는 구조의 물질 또는 나노 입자가 응집된 것을 말한다.
 - (다) "나노물질(Nano materials)"이란 입자의 크기가 3차원 중 적어도 1개의 차원 길이가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을 말한다.
 - (라) "나노에어로졸(Nanoaerosol)"이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나노물질의 집합체를 말한다.
 - (마) "극미세 입자(Ultrafine particles)"란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 연소, 용접 또는 디젤 엔진 가동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산된 나노 크기의 입자를 말한다.

KOSHA GUIDE W - 20 - 2012

(2) 그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 보건법」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관리대상 나노물질

이 지침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나노물질은 원소 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나노입자와 나노구조물질로 한다. 다만, 크기는 나노물질에 해당하나 자연, 인간 활동 및 사업장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연기나 흄 등 극미세 입자는 제외한다.

5. 나노물질의 노출작업 및 영향인자

5.1 나노물질의 노출작업

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나노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은 다음과 같다.

- 5.1.1 액체매질의 나노물질 사용 작업
 - (1) 액체매질의 나노물질 사용으로 피부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
 - (2) 액체매질의 나노물질을 혼합, 급속한 교반 등으로 호흡기 흡입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
 - (3) 호흡성 나노에어로졸을 형성하는 작업
- 5.1.2 기체 또는 분말 상태의 나노입자 발생작업
 - (1)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상태의 나노입자를 발생시키는 작업

KOSHA GUIDE W - 20 - 2012

(2) 나노구조의 분말을 취급하는 작업

5.1.3 유지·보수작업

- (1) 나노물질의 생산 설비 등의 유지·보수작업
- (2) 나노입자 포집 집진장치의 청소작업
- 5.2 나노물질의 노출 영향인자

나노물질의 취급에 있어 근로자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.

- (1) 나노물질의 취급의 양
- (2) 나노물질의 사용 및 노출시간
- (3) 나노물질의 공기 중 농도
- (4) 나노물질의 입자의 크기 및 형태
- (5) 인체의 노출부위 등

6. 나노물질의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사항

6. 1 일반사항

- (1)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사항은 유해·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고, 조치하여야 한다.
- (2) 나노입자 또는 나노 구조물질은 상대적으로 일반적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입자와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출기준이 있는 물질은 이 보다 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근로자 노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 W - 20 - 2012

6. 2 작업환경관리

- (1) 나노물질의 취급공정은 나노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 부터 근원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(2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밀폐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화 등의 조치 또는 작업과 관리공간이 격리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- (3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밀폐설비의 내부는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여 나노입자가 작업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.
- (4) 나노물질 취급 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발생 되는 나노물질을 배기하여야 한다.
- (5)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입자, 에어로졸, 증기 또는 가스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.
- (6) 공기정화장치로부터 배출되는 공기는 작업장의 내부로 재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구를 작업장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.

6. 3 작업관리

- (1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작업 관리지침을 제정하고, 작업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한다.
 - 1) 표준작업 절차
 - 2) 유해 · 위험성 및 예방 조치사항
 - 3) 환기장치의 가동 절차 및 요령
 - 4) 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
 - 5) 나노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

W - 20 - 2012

- (2) 분말 나노물질은 액체 또는 고체 매개물에 응집시켜 관리한다.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분말 대신 분산, 반죽형태(Paste), 또는 화합물 형태로 사용한다.
- (3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,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 조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나노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하여 보관한다.
- (5) 나노물질 취급 작업장은 기류이동에 따른 입자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장내에 퇴적 또는 누출된 나노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고성능필터의 진공청소기 등 흡입장치를 사용하거나 정전기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내도록 하고 흩날리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.
- (7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저장, 섭취, 흡연 등을 금지한다.
- (8)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고,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(9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나노물질이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 설비 등도 설치한다.

6. 4 건강관리

- (1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.
- (2) 건강진단에는 간장, 신장, 조혈기능, 폐기능 및 피부장해 등에 대한 검사와

W - 20 - 2012

나노물질 성분에 따른 표적장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- (3) 건강진단에는 나노물질의 대사산물 등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- (4) 건강진단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고, 검진결과 건강이상 소견이 발견된 근로 자에 대하여는 작업전환, 근무 중 치료 등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한다.

6. 5 개인보호구

- (1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급이상의 개인전용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갑은 나노물질의 피부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도록 한다.
- (4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개인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5) 개인보호구의 수는 종사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고, 보호구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(6) 나노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는 밀봉하여 나노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6. 6 안전관리

- (1) 분말상 나노물질은 입자의 비표면적이 크므로 폭발성과 인화성을 가질 있으므로 화재와 폭발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2) 분말상 나노물질은 비표면적이 커서 촉매작용을 통하여 통제불능의 반응을

W - 20 - 2012

유발 할 수 있으므로 취급전에 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시험하고, 파악된 위험성에 대하여 예방조치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3) 가스상 나노물질에 대하여는 불활성 가스를 충진하거나 수분이 제거된 상 대로 저장하는 등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4) 금속 나노물질은 산화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.
- (5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누출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당가스에 대한 측정장비를 구비하여 주기적인 측정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6) 나노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전류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감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6. 7 안전보건교육

- (1)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나노물질의 특성, 유해 가능성 및 잠재적 건강장해 영향, 작업 시 주의사항, 노출방지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를 기록하고 보관 관리한다.

6. 8 저장 및 폐기

- (1) 나노물질의 저장 또는 폐기물 처리는 유해성과 양 등을 고려하여 저장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한다.
- (2) 나노물질 폐기물은 전용의 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나노물질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처리한다.